

예산총칙

2021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,117,503,221	33,525,097
일반회계	989,154,510	29,674,635
특별회계	128,348,711	3,850,461
공기업특별회계	109,183,926	3,275,518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9,015,453	1,170,464
하수도사업특별회계	70,168,473	2,105,054
기타특별회계	19,164,785	574,944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988,959	59,669
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	775,141	23,254
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	450,717	13,522
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	8,806,555	264,197
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	6,052,776	181,583
지하수특별회계	1,090,637	32,71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,366,608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4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